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4일, 안도걸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4. 11. 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2024. 11.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2024. 11. 19.)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2024. 11. 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2025. 11. 1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안도걸의원)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

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